

##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07 ~ 21 |
|----------|-----------|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출연월일 | 2007. 7. 5 . |
| 제 출 자 | 거 창 군 수      |

### 1. 제정이유

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지원대상(안 제3조)

- 자동차세 연납자
- 정기분 지방세(자동차세2회, 재산세2회, 주민세) 납기내 납부자
-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

#### 나. 대상자 선정(안 제4조)

-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는 인원 등을 감안하여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
-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(법인 1,000만원이상,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자)는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선정함

#### 다. 지원범위(안 제5조)

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#### 라. 부칙

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5조는 1년 후 시행(안 부칙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- (2) 입법예고( 2007. 4. 2. ~ 2007. 4. 21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「공직선거법」 저촉여부 검토 결과

☞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: 기부행위 및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로 열거된 방법 이외에는 제공할 수 있음

##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자동차세 연납자"란 「지방세법」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.
2. "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"란 「지방세법」 및 「거창군세 조례」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, 주민세,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자한 자를 말한다.
3. "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"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,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.
4. "성실납세자"란 도세 및 군세(이하 "지방세"라 한다)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동차세 연납자
2.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
3.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

**제4조(대상자 선정)** 군수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제3조제1호는 1월중에 연납한 자로 하고,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정기분 지방세 중 납기내 납부한 자로 하며,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

2.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, 과거포상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정

**제5조(지원범위 등)**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동차세 연납자,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게 상품권, 생활용품, 교통상해보험 등으로 지급
2.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가.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
  - 나.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
  - 다.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